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533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변준석, 김민성, 이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민석, 박재한, 김장원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문기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1. 피고 B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 5, 6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3. 5.자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5,400,9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 5, 6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3. 5.자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4.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D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9, 10, 11, 12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3. 5.자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3,751,2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6.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9, 10, 12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29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1. 피고 B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 5, 6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3. 5.자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5,400,9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5,40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3. 5.자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4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4. 피고 C는 원고에게 16,4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D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9, 10, 11, 12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3. 5.자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3,751,2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6. 피고 D는 원고에게

74,355,6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1. ‘E는 원고에게 233,580,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51649), 위 판결은 2018. 10. 31.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19.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E와 피고 D, C가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3. 5.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가, 별지 목록 기재 9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가 각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19. 3.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 부동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3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9, 10, 12 부동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2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11 부동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접수 제302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

라. E는 2019. 4. 9.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9느단10300호),

위 법원은 2019. 6. 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E의 법정 상속지분은 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망인이 2019. 2. 19. 사망한 후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통모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모두 가지고 E는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약은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은 E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E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후 E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1) 원고는 E가 망인 사망 이후에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기 자녀(G)의 교육대금을 납부하고, 망인의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E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의 포기는 그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H은행 계좌에서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2. 22. 2차례에 걸쳐 각 38,000원(총 76,000원)이 E의 미성년 자녀인 G의 학습지 대금 지급을 위해 이체된 사실, 2019. 2. 21.부터 2019. 3. 7.까지 사이에 총 16차례에 걸쳐 망인 명의의 I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교육비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것은 망인 사망 이전부터 망인이 부담해오던 교육비가 망인 사망 이후에도 한차례 자동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E가 적극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 사망 이후에 망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만 확인될 뿐이지 망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E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사용처 또한 후불하이패스 또는 마트로서 이와 같이 교통비와 마트상품 구입에 소비된 것을 가지고 망인 상속재산에 관한 적극적인 재산처분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③ 민법 제1026조가 규정한 법정단순승인 제도의 취지는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고와 같은 상속포기자의 고유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정승호, 판사 우영식

별지

목 록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378㎡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
 층 창고시설 80㎡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답 58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답 132㎡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답 171㎡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답 2316㎡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묘지 377㎡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답 275㎡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 1507㎡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15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567㎡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 1필지 등 지상 철근콘크리트
 조 슬라브지붕 2층 농가용주택, 창고 1층 119.878㎡, 2층 112.11㎡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답 404㎡

끝.

